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영배·복기왕·윤후덕

전현희 · 이학영 · 박희승

이병진 · 강유정 · 민형배

한병도 • 박범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 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 은 직·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 를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로,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 에 대한 감면) ① -----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 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 -----100분의 10부터 <u>터 100분의 10까지</u>의 범위에서 100분의 20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세17 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④ (생 략)
-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생략)

100분의 30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를 100분의 15부터 1
00분의 30까지의 범위에서
,
⑥ (현행과 같음)